

02 안전확인

Q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3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한 경우
 7. 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⑪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입니다.

대상품목	적용안전기준	
유아용 섬유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이단침대	· 어린이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완구	· 완구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아용 의자	·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학용품	· 학용품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보행기	· 보행기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모차	· 유모차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아용 침대	·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아용 캐리어	·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품목별 적용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Q 안전확인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샘플제품을 제조하고,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 어린이제품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제품은 결과서와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법령

-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 · 검사기관(이하 "시험 ·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Q 안전확인신고 제품 유효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후에는 신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관련법령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Q 판매중지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등에 판매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관련법령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 ② 시 · 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 ·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